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소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875

발의연월일: 2024. 12. 24.

발 의 자: 김소희・김선교・김성원

최은석 · 성일종 · 최수진

주호영 · 서범수 · 조경태

우재준 • 이헌승 • 엄태영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오·폐수처리장을 비롯한 밀폐시설 근로자들이 황화수소 등의 물질에 의해 중독되어 질식사하는 일이 지속 발생함. 특히, 황화수소 의 경우 고농도 황화수소를 흡입할 경우 50%의 확률로 사망에 이르 게 됨.

이에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산소결핍으로 인한 질식의 위험이 있거나 유해가스로 인한 중독 또는 화재·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밀폐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,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(안 제38조제3항제5호 신설).

법률 제 호
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8조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산소결핍으로 인한 질식의 위험이 있거나 유해가스로 인한 중독 또는 화재·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밀폐된 장소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38조(안전조치) ①・② (생	제38조(안전조치) ①・② (현행과		
략)	같음)		
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	③		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			
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			
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			
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			
한다.	,		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		
<u><신 설></u>	5. 산소결핍으로 인한 질식의		
	위험이 있거나 유해가스로 인		
	한 중독 또는 화재・폭발 등		
	의 위험이 있는 밀폐된 장소		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		